

대학 간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 2022.02.16

개정 : 2022.05.01

개정 : 2023.10.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0조의2에 따라 본 대학교와 국내·외 타 대학(이하 “타 대학”이라 한다)과의 학점 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와 타 대학 간의 학점인정 교류에 관한 협정을 맺은 대학 또는 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대학에서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

제3조(자격)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1학기 이상을 이수한 본교 재학생(편입생은 편입학 후 1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2.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국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외국 대학과 학점인정 교류를 시행하는 학생만 해당)

제4조(정원) 학점인정 교류학생 정원은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신청시기) 타 대학과 학점인정 교류 수학 신청은 매 학기 단위(계절학기는 운영하지 않음)로 하며, 학기 개시 전 별도의 공지기간에 신청한다.

제6조(신청서류) 타 대학과 교류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인정 교류에 관한 협정을 맺은 대학에서 관련내용을 문서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2.05.01.>

1. 타 대학 수학 허가 신청서
2. 타 대학 수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타 대학 수강교과목 강의계획서
4. 본 대학 성적증명서

제7조(허가) 타 대학과 교류 수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제8조(수학기간) 교류 학생의 수학기간은 최대 3개 학기 이내로 하고 재학기간에 포함한다.

제9조(취득학점의 범위)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2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타 대학 수강학점은 최대 졸업학점의 1/2까지 이수 할 수 있다.

제10조(수학신청 및 변경) ① 수학신청 및 변경(취소포함)은 수학대학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② 본교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의 수학은 신청 할 수 없다.

③ 수학대학의 최종 수학신청 내역은 수업일수 1/4까지 본교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23.10.16.>

④ 타 대학에서 신청한 교과목의 이수 구분은 학과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타 대학에서 신청한 교과목이 전공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수강신청시 전공선택으로 한다.

2. 타 대학에서 신청한 교과목이 교양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수강신청시 교양선택으로 한다.

3. 타 대학에서 신청한 교과목이 교직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수강신청시 교직으로 한다.

제11조(등록) 타 대학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12조(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① 타 대학 교류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타 대학 학점인정 신청서와 성적증명서(타 대학 성적사정이 완료되지 않아 성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성적산출 자료로 대체 가능)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인정 교류에 관한 협정을 맺은 대학에서 관련내용을 문서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2.05.01.>

② 타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은 본교의 성적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본교의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인정 할 수 없다.

③ 타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 및 학점은 수학대학 성적증명서상의 교과목명 및 학점을 그대로 기록하고 성적의 경우 본교와 동일한 체계이면 그대로 기록하고 체계가 다를 경우 백분율점수를 확인하여 본교 성적 평점평균 점수 환산표를 적용하여 성적을 부여한다.

④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타 대학에서 이수한 것임을 표기(“타 대학 이수과목_교과목명”)한다.

제13조(학칙준수) 교류학생은 수학대학의 학칙과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수학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3장 타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4조(지원자격) 본교에서 교류 수학하고자 하는 타 대학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와 학점인정 교류에 관한 협정을 맺은 대학의 학생
2. 교과목 개설 학과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된 학생
3. 타 대학 학칙 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속대학의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

제15조(수학신청) 수학신청(또는 수학변경) 및 취소는 본교의 규정 및 절차를 따른다.

제16조(수학허가) 제14조의 지원자격 충족하는 자로 총장이 허가하여 수학여부를 확정한다.

제17조(수학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교류 수학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본교 학칙을 위반한 경우
2. 소속대학의 요청의 경우

제18조(정원) 수학 학생의 정원은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9조(수학기간) 수학기간은 최대 3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20조(등록) ① 수학허가 학생은 수학학기 기간 중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 특성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본교에서 따로 징수 할 수 있다.

제21조(성적처리) ① 학생이 취득한 성적은 학칙에 의거하여 본교 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대학에 통보한다. 이 경우 학생 소속대학의 필요에 따라 본교 기준 백분율 전환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과목의 성적평가를 점수(등급)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이수(P) 또는 미이수(NP)로 통보한다.

③ 학생에게는 별도의 학번을 부여하고 취득한 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④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시설물의 이용) 교류학생은 본교의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반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타 대학 학점 인정 신청서

학점인정 신청자	소 속	대학		학과	학년		
	학 번			생년월일			
	성 명			이수 학년도/학기			
교류내역	교류기관	대학교		학과(과)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인 정 학 점							
교 과 목 명	이 수 구 분	학 점	성 적			개 설 학 과 (○ ○ 대학 ○ ○ 학 과)	
			등 급	평 점	백 분 위 점 수		

년 월 일

성명 :

(인)

대원대학교 총장 귀하

